

1. 작 성 이 유

정부의 기획 및 심사본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0821호, 82.5.15)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기구 개편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자체 심사본석의 활성화를 통하여 예산 및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하고자함.

2. 주 요 내 용

가. 기획 및 심사본석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시함 (제3조)

나. 종래의 기본운영 계획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업무 계획 제도를 도입함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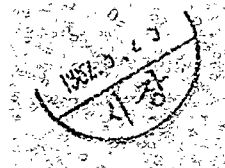
다. 심사본석검과에 따라 예산편성 또는 본기별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등 심사본석 검과 조치를 강화함. (제5조)

라. 구청, 사업소의 심사본석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권기관의 심사본석 활동을 활성화함. (제10조)

마. 기획 및 심사본석에 따른 보고책임, 기한등을 명시함. (제11조)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정부의 기획 및 심사본석에 관한 규정 (별첨)



서울특별시 기획 및 심사본청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서울특별시 혼란 제

서울특별시 기획 및 심사본석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업무의 기획 및 심사본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각국, 구청 및 직할 사업 소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대통령각하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상 책정된 사업
2. 대통령 각하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서 시 중요 경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3. 기타 시장에게 보고한 중요사업

(2)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 계획을 심사본석하기 쉽도록 시책별 또는 단위 사업별로 분류,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심사본석"이라 함은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이용~~ _{이용}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적을 본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획 및 심사본석 책임) (1)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을 포괄하여 시 전반 ^{행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_{행정에 대한} 기획조정 및 심사본석에 관한 책임을 지며 기획담당관은 시 주요업무 계획, 시행계획의 종합 및 심사본석 업무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2) 본청국장 (이하 "국장"이라 한다),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소관업무 (산하 사업소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 및 ~~심사본석~~ _{심사본석}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3) 국 주무과장, 구청, 총무국장 및 직할사업소 서무담당과장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심사본석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장, 구청장, 및 직할

사업소장을 보좌한다,

제4조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1) ^{4.22} 기획관리실장은 매년 8월 30일까지 다음년도 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2)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주요 업무 계획 및 예산안을 그 해 9월 30일까지 시장 (기획관리실장 참조) ^{제출하여}에게 보고한다.

(3) 제2항의 주요업무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후 이를 보완하여 확정한다.

제5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1) 기획관리실장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그 해 2월 10일까지 시장 (기획관리실장 참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시책 또는 사업의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의 사용등 부득 이한 사유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자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사유서 및 그 근거 자료와 함께 이를 기획 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본질) (1)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은 시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본질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년도의 심사본질 지침을 작성 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제1항의} 심사본질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끝 난후 20일이내 심사본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기획관리실장 참조)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획관리실장(기획담당관)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 및 사업중 중점적으로 심사본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 매월심사본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자료 제출 및 설명요구등) 기획관리실장은 시 전반에 대한 심사본석 업무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인, 점검을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본석 결과의 처리) (1)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본석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는 이미 시정한 조치내용, 조치계획 및 주요시책과 사업의 대한 추진 상황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기획관리실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본석의 결과를 통보 받거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본석을 실시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예산편성 또는 본기별 예산 배정에 반영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한후 그 명을 받아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에게 그 시정을 명인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받은 관계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심사본석 평가 보고) 기획관리실장은 년2회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의 심사본석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보고) (1) 기획 및 심사본석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보고는 임보, 주보, 월보, 분기보고, 수시보고로 한다.

(2) 제1항의 보고내용과 보고기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보 - 임의 주요업무 처리 실적 및 계획

(매일 일과 종료시까지)

2. 주보 - 주간 ~~업무~~ ^{계획} ^{일과중단}
(매주 목요일 12시까지)
3. 월보 - ~~월간 주요업무계획~~, 시장지시사항 처리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매월 5일까지)
4. 본기보고 - 심사본식보고,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추진현황
(매월본기 20일까지)

제12조 (보고의 책임) 보고의 제출 및 수합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작성자 : 주관과 주무계장 (구청, 직할사업소 담당계장)
2. 제출책임 : 주관과장 (구청, 직할사업소 주관과장)
3. 수합책임 : 국, 실의 주무과 주무계장 (구청 기획감사과장, 직할
사업소 서무과장)
4. 수합감독 : 국 주무과장 (구청 총무과장)

제13조 (위원회의) (1) 시장 시책과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과국
과 소속기관의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책조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주요업무 협의) 부시장 이상의 결제를 요하는 문서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1. 중요시책 입안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정원, 운영사업 분주, 주요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규칙법규의 정비방침이나 소송에 관한 중요사항
4. 현황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기탁 중요사항

제15조 (기탁 자료 제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한 주무과장은 그 자료의 부분
1부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약대, 국무총리실등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자료

2. 대외공표를 위한 지정자료
3.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유인물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심사본선 업무취급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시강